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연구 활동 결과 보고서

2022. 6.



충청남도의회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1	대 표	이 선 영	충청남도의회의원(기획경제위원회)	
2	간 사	김 학 로	당진시역사문화연구소장	
3	회 원	이 공 휘	충청남도의회의원(기획경제위원회)	
4	〃	이 미 영	충청남도청 여성가족정책관 가족다문화정책팀장	
5	〃	김 경 화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다문화교육센터 장학사	
6	〃	윤 향 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7	〃	우 복 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	우 삼 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9	〃	유 요 열	(사)홍성이주민센터 대표	
10	〃	류 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목 차

제1장 총 평	1
1. 2022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3
제2장 연구모임 등록	5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7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8
3.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9
제3장 연구모임 활동 경과	13
1.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토론회	15
2. 연구모임 제2차 토론회	33
제4장 연구활동 결과보고	79

제1장 총평

☐ 2022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2022년도 의원 연구모임 활동결과 보고

제1장 총 평

□ 주요 성과

- 충남의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2022. 5. 31.)
- 지역 이주민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제 제시

□ 아쉬운 점

- 구체적인 정책제안(연구모임 성과)를 도출할 연구기간 부족(2~3월)
※ 전국동시지방선거(2022. 6. 1.)

□ 향후 계획

-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
 -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생활 실태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근거, 건강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과 교육, 가정폭력 보호, 다언어 서비스 제공 등을 담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의식주, 보육, 안전 보장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 규정
-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워크숍, 포럼 등 지속 추진
 - 관·산·학·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유기적인 협업

제2장 연구모임 등록

1. 의원연구모임 등록신청서
2. 의원연구모임 연구활동계획서
3.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의원 연구모임 등록신청서

1. 모임명 :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2. 대표자 : 이선영 의원
3. 연구목적 :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4. 구성원 : 6명

구분	성명	소속 또는 상임위원회	서명날인	비고
대표	이선영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
간사	김학로	해외동포정착지원센터		센터장
회원	이공휘	기획경제위원회		도의원
"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	유요열	(사)홍성이주민센터		이사장
"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팀장

※ 붙임 : 회칙 또는 정관 (있는 경우에 한함)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 연구모임 등록을 신청합니다.

2022년 1월 일

충남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선영 (인)

충청남도의회의회장 귀하

연구활동 계획서

연구모임명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 표 자		이선영 의원
연 구 내 용	과 제	지역 이주민의 노동 및 정주현실을 이해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제시
	목 적	-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활동기간		2022. 2. 1. ~ 2022. 6. 20.
연구방법·연구활동 내용 및 세부계획		「불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3,000천원
	산출내역	「불 임」
기타사항		

※ 불 임 :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역 각 1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1월 일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선영 (인)

충청남도의회의회장 귀하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 계획

1. 모 임 명 :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2. 대 표 자 : 이선영 의원
3. 연구목적 :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4. 연구과제 : - 지역 이주민의 노동 및 정주 현실 이해
- 지역 이주민의 지원정책체계 분석(충남, 타 지자체, 중앙정부, 해외사례 등)
- 지역 이주민의 존엄한 노동과 정주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추진체계 제안

5. 연구방법

가) 추진 주체

지역 내·외, 학계, 행정, 민간단체 등 6명 연구위원 위촉

나) 추진 내용

- 지역 이주민의 노동 및 정주 실태(워크숍)
- 지역 이주민의 지원정책체계 분석(워크숍)
- 지역 이주민의 존엄한 노동과 정주를 위한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마련(토론회)
- 과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 및 성안(워크숍)

다) 세부 추진 계획

① 1차 워크숍

- 일시 : 2022. 2월 ~ 3월

- 장소 : (안) 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지역 이주민의 노동현실과 정주여건 실태 공유

② 2차 워크숍

- 일시 : 2022. 3월 ~ 4월
- 장소 : (안) 도청 대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국내 및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 모색

③ 정책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 일시 : 2022. 4월 ~ 5월
- 장소 : (안) 도청 대회의실
- 참석 :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시민등 100명 내외
- 내용 : 지역 이주민의 존엄한 노동과 정주를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추진체계 제안

④ 3차 워크숍

- 일시 : 2022. 5월 ~ 6월
- 장소 : (안)충청남도의회 회의실
- 참석 : 연구위원 및 관련 공무원, 민간단체 대표자 20명 내외
- 내용 : 과제 개선 및 해결을 위한 입법 논의 및 성안

라) 간사단 운영

- 연구팀 구성과 워크숍 운영, 사업 정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별도 간사단(4인 이내) 운영

4. 추진 일정

- 1월 중 연구 팀 구성과 과제 논의
- 2~4월 중 분야별 워크숍
- 4~5월 중 도민 토론회 개최
- 5~6월 중 조례 제·개정안 논의 및 정책 제안서 작성

5. 기대효과

- 다문화정책 및 이주노동자 정책등 분절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발생한 행정 사각지대를 발견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 등 지원체계 마련방안 모색
-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노동, 돌봄, 문화적응 등 일과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 제고

제3장 연구모임 활동 경과

1.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토론회
2. 제2차 연구모임 토론회

1.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토론회

1 연구모임 발족 및 제1차 회의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발족식 및 제1차 회의 개최

- ◇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 가능성 모색

□ 개요

- 일 시: 2022. 2. 24.(목) 14:00~16:00
- 장 소: 충남도의회 2층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209호)
- 대 표 자: 이선영 도의원
- 참 석 자: 10명(도의원 2, 연구모임 회원 8)
- 내 용: 「지역 이주민 존엄관련 정책」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20	20′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이선영 의원
14:20	14:50	30′	• 주제발표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김학로 소장 (당진역사문화연구소)
14:50	15:40	50′	• 토론 및 질의응답	회원 전원
15:40	15:50	10′	• 2차회의 조율 및 모임 운영방안 논의 (주제 및 발표 등)	〃
15:50	16:00	10′	• 마무리 및 폐회	이선영 의원

2 연구모임 제1차 토론회 발제

외국인의 존엄한 삶을 향한 문제제기

김학로

1. 머리말

국내에서 외국인을 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국내 거주 외국인은 꾸준히 증가하여 이제 시골에서조차 외국인을 흔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없으면 농사조차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다. 외국인의 대부분은 이주노동자이다. 이주노동자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노동을 위해 이주한 경우이다. 문제는 이들 이주노동자, 외국인들이 인권을 온전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일이 많으며 이로 인해 존엄한 삶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이 존엄한 인간으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외국인을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역 주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존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이에 외국인 거주 주민이 많은 충남에서 외국인의 존엄한 삶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외국인 주민의 현황과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

2019년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에 의하면, 한국에 입국해 살고 있는 외국인 수는 2,393,189명이다. 전 국민의 5% 가까운 외국

인이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국내 거주 이주민(외국인+귀화자+외국인주민 자녀)의 수는 경기>서울>경남>충남의 순서이다. 그러나 충남도의 총인구 대비 이주민 비율은 5.4%로 전국 평균인 4%보다 월등하게 높다. 이러한 충남도내 이주민 인구 비율은 2017년 4.8%였던 것에 비해 5.4%로 증가한 것으로 해가 갈수록 그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충남도 인구 증가율 0.88%에서 이주민 인구 증가율이 11.7%인 점을 감안하면 증가 인구의 64.5%가 이주민이란 뜻이다. 또한 충남도의 이주민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국인노동자 비율이 30.1%로 전국 평균 25.7%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그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 제16조(주민의 자격)는 주민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고 하고 있다. 주소를 가진 자는 대한민국 국민만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법적 근거에 따라 외국인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한 같은 법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에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의 경우는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이거나 주민이 될 수 있는 외국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했다는 점과 같은 법 제8조 ①항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체계적 정책과 사업을 통한 지원은 행정적 편의 제공의 문제도 아니고, 복지에 대한 수혜의 문제도 아닌 의무사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현재 충청남도과 시군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은 정부 위임 사무에 해당하거나 관련 부서의 피상적인 사업이나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와 같은 위탁기관 사무가 있기는 하지만 자치단체가 직접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간혹 다문화가족 사업을 외국인 정책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는 엄격히 말해 다문화가족사업이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온전한 사업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자치단체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따라서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인권과 존엄한 삶을 위해서는 충청남도와 각 시군에서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고 정책개발을 통한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권을 보장하며 존엄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3. 외국인 주민 고려인동포의 현황

국내 거주 이주노동자는 여러 가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외국 국적의 해외동포 이주노동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기 거주 외국인이다. 따라서 외국인 주민에 해당하는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은 조선족과 고려인이다. 해외동포인 이들은 다른 외국인과 달리 개인적 희망으로 입국이 가능하고 영주권을 얻어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 이들의 한국 이주는 중국과 구소련권 국가에서 이주한 경우이고, 이주 목적은 생계를 위한 이주노동에 있다. 한국에서의 이주노동자 삶이는 여러 측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 이 중 조선족 동포들은 이주노동의 역사가 깊고 언어소통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편이며, 이미 13만 명 이상이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한 경우이다.

고려인 동포는 전 세계적으로 55만 명에 이른다. 이 중 대략 10만 명 이상이 한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다. 고려인들의 한국 이주는 2000년대 들어서 부터였다. 고려인들이 한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일자리에 있다, 그리고 이왕 일자리를 찾아 이주할 것이라면 할아버지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 이

유에서였다. 그래서 고려인들은 가능하면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 거주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경기도 안산에 집중해서 살고 있다.

충남지방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산시가 가장 많아서 신창, 둔포면에 7,000명 이상이 살고 있다. 이 밖에도 천안시에 3,000명, 당진시와 서산시에 각 1,000명이 살고 있고, 이 밖에도 논산시와 홍성군에 다수 분포해서 살고 있다. 이를 모두 합하면 충남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의 총수는 대략 12,000명 이상으로 경기도 다음으로 많은 수의 고려인 동포가 충남에 살고 있는 것이다.

고려인 동포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경우라서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고려인 동포의 신분이 외국인에 불과하다는 점으로 인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부정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인 동포의 정체성은 스스로 고려사람이고 한국이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대부분의 한국 이주 고려인 동포는 한국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해외동포는 이중국적자이거나 국적 회복을 통해 신분이 보장되지만 정부수립 이전 해외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귀화 시험을 통한 방법 외에는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가적 법률제정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자치단체 차원의 외국인 정책이나 해외동포 정책을 통해 고려인동포의 안정적 정착을 통한 존엄한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필요성이 충분하다 하겠다. 다행히 충남의 경우 2021년 충남도의회에서 이선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고려인 동포 지원조례가 제정되었다.

고려인들은 외국인 신분이다. 외국인으로 한국에 입국하려면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해외동포 비자인 F4 비자를 받거나 방문취업 비자인 H2 비자를 받고 들어온다. 이렇게 입국한 고려인 동포는 일정 기간을 거쳐 가족을 초청해 거주하게 된다. 가족 입국은 미성년의 자녀는 방문비자를 받고 들어온다. 최근 법률 개정으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에게는 해외동포 비자를 발급하기로 하여 해외동포 사이에서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다.

4. 고려인동포와 외국인이 겪고 있는 문제

충남에서 거주하는 외국인은 고려인 동포가 다수이다. 따라서 고려인 동포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곧 외국인 전반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려인 동포가 집단 거주하는 곳은 아산시 신창, 둔포면 천안시 신부동, 입장면, 목천면, 당진시 합덕읍, 내포 신도시 등이다. 고려인들이 모여 사는 곳의 특징은 첫째로 주변에 취업할 수 있는 공장이 많고, 둘째는 보증금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원룸이 많은 곳이고, 셋째는 자녀교육이나 고려인끼리 모여 살기 좋은 정주 여건을 갖추었다는 특징이 있다.

고려인 동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안정적인 정착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한국말을 빨리 배우는 일이다. 한국에서 살아가기 위해 한국말을 배워야 하는데 러시아어 밖에 할 줄 모르는 고려인에게는 한국어는 어려운 외국어이다.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문제는 이들이 한국어를 배울 비용과 시간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단순히 다문화 정책 자원으로 전개하는 사업으로는 고려인 동포 문제가 수렴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고려인 동포의 또 다른 문제는 자녀에 대한 교육 문제이다. 대부분 중도 입국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려인 아이들은 한국말을 잘하지 못한 채 학교에 다니고 있다. 따라서 같은 연령에 따른 학년에서 학습 진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결국 고려인들은 대를 이어 어디에서도 정착할 수 없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다. 고려인 아이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지역 차원의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어린 유아의 경우이다. 학교에 들어가면 무상교육 대상이지만 외국인인 고려인에게는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 아이를 유아원에 보내려면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다. 보통 어린이집 한 달 비용이 50만원이다. 두 셋의 자녀라도 두게 되면 감당하기 쉽지 않은 비용이 된다. 고려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자치단체가 신경써야 할 내용이다.

또 다른 문제는 이주노동자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노동 현안의 문제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임금에 관한 문제, 산업재해의 문제, 근로조건에 관한 문제에서 언제든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조건에 놓여있다.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고려인 이주노동자의 노동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들이 어떤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는지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하고 있는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고 부당한 피해에 지원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의료보험, 비자 등의 문제가 다양하지만 자치단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렇듯 고려인들이 한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충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존엄한 삶을 위한 문제제기를 고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외국인은 이제 주변에서 이웃으로 살아가는 일상이 되었다. 또한 법으로 보장된 지역주민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외국인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고스란히 외국인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충남에서 살아가는 외국인 주민의 삶에 대해 관심을 가질 때다. 이번 의원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에서 외국인 주민이 존엄한 삶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지방자치법>

제8조(사무처리의 기본원칙) 판례문헌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제12조(주민의 자격) 판례문헌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3조(주민의 권리) 판례문헌

-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조례의 제정과 개폐 청구) 판례문헌

-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와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4.1] [[시행일 2009.10.2]]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제16조(주민의 자격) 주민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 (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출입국관리법>

제6조(국내거소신고)

- ①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는 이 법을 적용받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한민국 안에 거소(居所)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국내거소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2014.5.20] [[시행일 2015.1.22]]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국내거소를 이전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거소(新居所)가 소재한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2016.5.29] [[시행일 2016.9.30]]

③제2항에 따라 거소이전 신고를 받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신거소가 소재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에게, 시·군·구 또는 읍·면·동의 장은 신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각각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제12421호(출입국관리법), 2016.5.29] [[시행일 2016.9.30]]

④국내거소신고서의 기재 사항, 첨부 서류, 그 밖에 신고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2. 영주자격: 대한민국에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전문개정 2018.3.20] [[시행일 2018.9.21.]]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된다. <개정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② 18세 이상으로서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이 있다. <개정 2009. 2. 12., 2011. 11. 7., 2014. 1. 17., 2015. 8. 13., 2020. 1. 14.>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2009. 2. 12. 법률 제9466호에 의하여 2007. 6. 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된 이 조 제2항제1호를 개정함.]

[제목개정 2011. 11. 7.]

3 연구모임 제1차 토론회 회의록

〈이공휘 충청남도의회의원(기획경제위원회)〉

- 현재 제도에 대한 실태조사가 선행된 후 이주민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전달한다면 훨씬 의미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음

〈이선영 연구모임 대표〉

- 외국인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한 분들은 나름 관리가 되고 있는데 동포비자로 들어온 분들은 출입국 절차만 관리하고 그 외는 관리가 안되고 있어 이분들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부재, 부적절한 고용허가제 등 폐단이 많이 있는 상황임.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 법무부에서 외국인 비자 중 f4 동포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분들을 관리하지 않아 결국 일용직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함. 현행 제도상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관리 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지자체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해 보았으면 함.
- 다양한 형태의 이주민의 상황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혐오와 차별의 문제는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인권교육은 어떻게 하고 행정체계의 틀은 어떻게 갖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광역단위에서 이주민 실태조사, 모니터링, 유관기관 교육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듯.

〈류민 총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 최근 중국동포에 대한 사회적 혐오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 연구모임을 통해 고려인 동포와 함께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음.
- 한국사회가 동포들에 대해 역사적 책임을 다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연구모임이 집중하는 대상에 차등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바람.
- 의회 연구모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에 대한 정책적 근거를 잘 마련했으면 좋겠음.
 - 기본계획을 재검토하면서 시책사업 몇 가지를 발굴하여 추진해 볼 필요성이 있음.
 - 이주민 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조례 제·개정의 움직임과 연구모임에서 고민하고 있는 정책적 개선의 논의를 어떻게 연계할 건지 논의했으면 좋겠음.

〈우복남 총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동포 가족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음
 - 조례에 가정폭력 예방 같은 조항을 넣어야 함
 - 일자리노동정책과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 때문에 여성가족정책관이 함께 협력해야 함.

- 전담부서 구성이 필요함
- 충청남도도 법정주기에 맞춰서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해야 함.
- 외국인 주민이 많은 지자체의 경우 통번역 사업을 많이 주관
 - 통번역서비스의 제공이 지역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광역에서 관심을 가져야 함.
 - 통번역서비스 사업을 제공할 법적인 근거를 만들 필요.

〈이미영 여성가족정책관 팀장〉

- 현재 여성가족정책관이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주민을 같이 담당하고 있고 노동 분야는 일자리노동정책과에서 담당하는 등 전담부서가 없고 분절적인 정책으로 어려움이 있음.

〈이선영 연구모임 대표〉

- 전담부서는 존재하지 않고 팀에서 하려니 어려움이 있음. 사각지대가 많은데 인원 2명~3명 가지고는 역부족임.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여가부가 전국적으로 200여개가 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담당하여 언어교육을 많이 실시함. 충남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기관으로 3개의 거점기관이 있음. 코로나 이전에는 인원제한 없이 대면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코로나19 상황으로 평일에 15명 교육. 평일 수업을 들을 수 없는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상황으로 교육 환경이 악화됨.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언어교육이 필수적.

- 주민등록법에 의해 지원되는 자녀 보육료는 고려인 자녀에 해당되지 않음. 어린이집 보육료는 한달에 1인당 약 50만원인데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라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상황,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재교육비가 더 들어감.

〈유요열 (사)홍성이주민센터 대표〉

- 이주민을 주민으로 인정하는 것과 모두가 동등한 노동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선언해야 함.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 ‘사회통합교육’으로 생활법률, 주민교육 등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하는데 현재 법무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통합교육은 몇 시간 이수하면 교육시간을 채우는 형식적인 교육에 지나지 않음. 도가 주도해서 사회통합기구의 교육프로그램, 적응지원프로그램, 양육보육 지원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함.

〈김학로 당진지역사문화연구소장〉

- 충청도에서 고려인 동포들이 주민으로 정착하여 일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고 정책을 만들 의무가 있음.

〈우복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아이들 보육료만큼은 고르게 지원해야 함. 아이들은 1년만 어린이집에 다녀도 한국어 등 일상생활이 되고 초등학교 이후 문제가 많이 해소됨. 보육부서의 일인지 다문화 부서의 일인지 논쟁이 있는데 보육부서에서 추진하면 좋을 것.

〈김경화 충청남도교육청 미래인재과 다문화교육센터 장학사〉

- 충남 외국인 자녀가 급증하고 있는 실태.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6개월간 한국어 교육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교육부 답변은 그것은 법무부 차원의 일이라며 선을 그음. 또한 학령기 학생들 대상이기 때문에 균등한 교육 차원에서 별도 분리해서 교육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 될 수 있고 한국어 교육만을 한다면 학교 학과과정에 공백이 생긴다는 이유로 거부함. 현재 교육부에서는 학교과정을 따라가며 주당 10시간 정도의 한국어 교육을 하고 있는 실정.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 어린이집은 애들이 없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

〈이선영 연구모임 대표〉

- 유아학비 문제만 해결되어도 문 닫는 어린이집과 아이들 언어 등 2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

4 토론회 결론

○ 이주민 현황 파악 선행

- 가족 중심으로 입국하는 동포자녀들에 보육료 고르게 지원 필요
-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언어 교육 필요
- 이주민 지원 조례 개선 필요

○ 전담부서 설치 필요

- 한 개 팀에서 다문화정책을 담당하다 보니 사각지대 발생
- 다문화정책과 외국인 지원 정책을 구분해서 지원 필요
- 전담부서에서 노동, 보육, 다문화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 필요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 공유, 협치 필요

- 농촌노동력부족문제, 지방인구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대책과 지방정부 정책과의 거리감을 좁혀야 함.

5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 및 의견들이 도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6 연구모임 제1차 토론회 언론보도

이주민 일과 삶 개선 위한 정책발굴 나선다

이선영 충남도의원 대표 맡아...연구기관 등 11명으로 구성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연구모임 발족

[1395호] 김예나 | 승인 2022.03.04 22:12



▲ 지난달 24일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이 발족했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도내 이주민의 일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연구에 나선다.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이 지난달 24일 발족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노동과 삶의 현실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조직됐다. 모임 대표는 이선영 충남도의회 의원이 맡았으며 회원은 연구기관·단체 관계자 등 11명으로 구성됐다.

발족식 이후 열린 첫 회의에서는 김학로 당진시역사문화소장이 ‘외국인의 존엄한 삶을 향한 문제 제기’라는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여자 토론과 향후 계획 논의 등이 이뤄졌다. 김학로 소장은 “2019년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전 국민의 5%인 239만3000명”이라며 “외국인 주민도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지역주민으로,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외국인 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도록 정책개발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 다른 나라의 이주민의 지원정책을 연구·분석하고 지역 이주민의 노동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중장기 정책 발굴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선영 도의원은 “다문화정책 및 이주노동자 정책 등 분절적인 이주민 정책으로 행정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이주민들의 일과 삶의 여러 문제들을 인식하고 지역에서 가능한 정주여건 개선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2. 연구모임 제2차 토론회



1 연구모임 제2차 토론회 회의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제2차 회의

□ 개요

- 일 시: 2022. 3. 30.(수) 14:00 ※ 1차 회의: 2. 24.(목) 14:00
- 장 소: 충청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209호)
- 대 표 자: 이선영 의원
- 대 상: 10명(연구모임 회원, 발제자)
- 내 용: 주제발표 및 자유토론
 - 「충청남도 이주민 관련 조례 개선방안」(우북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재난시기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정보접근권」(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

□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14:00	14:03	3'	• 기념촬영	김학로 간사
14:03	14:07	4'	• 회의안내 및 참석자 소개	김학로 간사
14:07	14:10	3'	• 인사말씀	이선영 의원
14:10	14:50	40'	• 주제발표	우북남 연구위원 류민 팀장
14:50	15:50	60'	• 토론 및 질의응답	회원 전원
15:50	16:00	10'	• 마무리	이선영 의원

2 연구모임 제2차 토론회 발제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충청남도 이주민 관련 조례·정책 개선 방안

(2022.03.30.)

우복남(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I. 충남 거주 (국제) 이주민 현황

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11.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 외국인주민 수는 경기 715,331명, 서울 443,262명, 인천 130,845명, 경남 125,817명, 충남 122,826명 순(수 충남 5위)
-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전국 4.1%)은 충남 5.6%, 경기 5.3%, 제주 5.0%, 서울 4.8%, 충북 4.5%, 인천 4.4% 순(비율 충남 1위)

< 2020.11.월 기준 시·도별 외국인주민 현황 >

(단위 : 명)

시·도	총인구 수(A)	외국인주민 수(B)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 (B/A)	전체 외국인주민 대비 구성비
계	51,829,136	2,146,748	4.1%	100.0%
서울특별시	9,586,195	443,262	4.6%	20.6%
부산광역시	3,349,016	72,729	2.2%	3.4%
대구광역시	2,410,700	50,530	2.1%	2.4%
인천광역시	2,945,454	130,845	4.4%	6.1%
광주광역시	1,477,573	40,480	2.7%	1.9%
대전광역시	1,488,435	32,061	2.2%	1.5%
울산광역시	1,135,423	35,746	3.1%	1.7%
세종특별자치시	353,933	9,312	2.6%	0.4%
경기도	13,511,676	715,331	5.3%	33.3%
강원도	1,521,763	36,349	2.4%	1.7%
충청북도	1,632,088	72,692	4.5%	3.4%
충청남도	2,176,636	122,826	5.6%	5.7%
전라북도	1,802,766	60,872	3.4%	2.8%
전라남도	1,788,807	66,370	3.7%	3.1%
경상북도	2,644,757	97,953	3.7%	4.6%
경상남도	3,333,056	125,817	3.8%	5.9%
제주특별자치도	670,858	33,573	5.0%	1.6%

- 외국인주민 수 10만 이상이면서 총인구 대비 5% 이상인 광역은 경기와 충남 2곳(비율은 충남이 경기도 보다 높음)

< 매트릭스 분석: 외국인주민 수+총인구 대비 비율: 2020.11.기준 >

구 분	총인구 대비 5% 이상	총인구 대비 4% 이상	총인구 대비 3% 이상	총인구 대비 2% 이상
외국인주민수 10만명 이상	경기, 충남	서울, 인천	경남	
외국인주민수 5만명 이상		충북	경북, 전남, 전북	부산, 대구
외국인주민수 3만명 이상	제주		울산	광주, 강원, 대전
외국인주민수 3만명 미만				세종

- 충남 외국인주민 밀집 시군은 천안, 아산, 당진, 논산, 보령 5개 시, 예산, 금산 2개 군 등 7개 지자체

<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 현황/2020.11월 기준 >

전 국(88)	5만명 이상(7), 3만명 이상(7), 1만명 이상(51), 1만명 미만(23)
충 남 (7)	천안시 34,427명(5.0%), 아산시 31,707명(9.3%), 당진시 10,324명(6.1%), 논산시 7,361명(6.1%), 보령시 4,957명(5.0%), 예산군 4,124명(5.3%), 금산군 3,935명 (7.3%)

○ 외국인주민 유형별로는 (기타를 제외할 경우) 근로자 > 동포 > 결혼이민자 > 귀화자 순으로 다수를 차지함

* 아래 표의 국내출생 자녀는 출생 한국인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외국인’ 주민이라 보기 어려움

* 귀화자도 이미 국적상 한국인으로 엄격한 의미에서 외국인은 아님

* ‘외국인주민’은 행안부 용어임. ‘내국인’ 주민 대비 ‘외국인’주민과는 다른 개념임

< 2020.11. 기준 외국인주민 유형별 현황 >

구분	총인구 (‘20.11.1.)	인구 대비 (%)	외국인주민 (합계)	한국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한국국적 취득자	외국인 주민(자녀 (출생))
				소계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기타 외국인		
계	51,829,136	4.1%	2,146,748	1,695,643	455,287	173,756	142,569	345,110	578,921	199,128	251,977
서울	9,586,195	4.6%	443,262	366,454	63,526	31,661	46,925	102,828	121,514	43,769	33,039
부산	3,349,016	2.2%	72,729	54,914	12,711	7,365	10,547	4,197	20,094	6,422	11,393
대구	2,410,700	2.1%	50,530	37,398	8,026	5,474	6,128	3,380	14,390	4,669	8,463
인천	2,945,454	4.4%	130,845	99,212	22,450	11,771	5,177	22,213	37,601	16,100	15,533
광주	1,477,573	2.7%	40,480	30,573	6,392	3,723	5,576	3,223	11,659	3,483	6,424
대전	1,488,435	2.2%	32,061	22,928	2,838	3,538	5,807	2,033	8,712	3,228	5,905
울산	1,135,423	3.1%	35,746	26,895	6,997	3,461	1,662	5,282	9,493	3,382	5,469
세종	353,933	2.6%	9,312	7,244	2,020	878	1,180	918	2,248	729	1,339
경기	13,511,676	5.3%	715,331	583,462	176,517	52,907	19,501	145,609	188,928	65,976	65,893
강원	1,521,763	2.4%	36,349	24,654	5,830	3,927	3,876	2,123	8,898	4,064	7,631
충북	1,632,088	4.5%	72,692	57,094	18,099	5,670	3,822	10,466	19,037	5,816	9,782
충남	2,176,636	5.6%	122,826	99,166	31,406	9,032	6,816	19,604	32,308	8,946	14,714
전북	1,802,766	3.4%	60,872	42,366	10,475	6,059	8,251	2,413	15,168	5,945	12,561
전남	1,788,807	3.7%	66,370	45,236	17,792	6,755	2,209	2,516	15,964	6,393	14,741
경북	2,644,757	3.7%	97,953	74,547	23,431	7,987	9,626	6,194	27,309	7,769	15,637
경남	3,333,056	3.8%	125,817	96,669	37,628	10,661	3,407	9,889	35,084	10,117	19,031
제주	670,858	5.0%	33,573	26,831	9,149	2,887	2,059	2,222	10,514	2,320	4,422

2) 2021년 충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 정책 과제 수 및 예산 현황

- 2021년 충남 다문화가족정책 과제 수는 113개로 전국 2번째로 많으나(전남 다음으로 많은 수), 예산은 41억 5,700 만원으로 전국 11위 수준 (예산이 충남보다 적은 곳은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제주, 충북)

<2021년 다문화가족정책 시행계획 중앙부처 및 지자체별 과제수 및 소요예산>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예산	
		2020	2021	2020	2021
부처별	계	121	119	451,804	469,459
	교육부	16	16	22,022	34,807
	외교부	7	7	31,031	4,157
	법무부	7	7	738	414
	국방부	1	1	6	6
	행정안전부	2	2	비예산	비예산
	문화체육관광부	6	6	3,132	3,242
	농림축산식품부	2	2	1,666	1,333
	산업통상부(KOTRA)	1	1	20	30
	보건복지부	4	4	3,407	3,375
	고용노동부	4	4	9,566	16,831
	여성가족부	58	56	370,299	393,516
	국토교통부	1	1	비예산	비예산
	중소벤처기업부	1	1	6,557	8,819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	3	2,148	1,628
	경찰청	3	3	502	591
	국세청	과제종료		과제종료	
	농촌진흥청	3	3	80	70
	소방청	2	2	630	640
시도별	계	1,086	1,211	111,125	115,246
	서울특별시	50	55	6,111	6,036
	부산광역시	75	69	9,036	7,714
	대구광역시	65	59	2,949	3,133
	인천광역시	92	77	6,656	5,333
	광주광역시	49	47	7,022	6,601
	대전광역시	61	64	2,228	3,194
	울산광역시	41	39	1,737	2,459
	세종특별자치시	18	20	403	426
	경기도	95	105	11,475	10,849
	강원도	44	45	12,455	14,239
	충청북도	82	86	3,236	3,609
	충청남도	95	113	4,289	4,157
	전라북도	52	52	7,903	11,364
	전라남도	84	192	12,443	9,990
	경상북도	38	38	8,763	7,063
	경상남도	108	108	12,234	16,601
	제주특별자치도	37	42	2,185	2,478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2021.4. 여성가족부: 9쪽)

- 2021년 충남 외국인정책 과제 수는 101개로 전국 2번째로 많으나(서울, 경기 각 103개), 예산은 82억 2,100만원으로 전국 14위(충남 보다 적은 곳은 대전, 울산, 세종, 경북)

<2021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지자체별 과제수 및 소요예산>

[참 고 2]

지방자치단체 사업규모 및 예산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기 관 \ 연 도	2021년	
	과 제 수	예 산
합 계	1,045	245,758
서울 특별 시	103	38,161
부산 광 역 시	21	8,770
대구 광 역 시	65	9,671
인천 광 역 시	26	15,103
광주 광 역 시	67	8,987
대전 광 역 시	50	4,345
울산 광 역 시	61	5,538
세종 특별 자 치 시	10	191
경 기 도	103	36,278
강 원 도	52	20,201
충 청 북 도	68	6,270
충 청 남 도	101	8,221
전 라 북 도	48	27,677
전 라 남 도	92	21,288
경 상 북 도	53	7,198
경 상 남 도	83	12,463
제 주 도	42	15,396

자료: 2021년 중앙행정기관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법무부(2021.07. 29쪽).

2. 충청남도(광역시) 이주민 관련 조례 현황

1) 인권조례

- 도민 조건에 90일 초과 기준이 없음
- 거주하지 않고 도내 사업장 노동자도 포함함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시행 2020. 4. 1.] [충청남도조례 제4679호, 2020. 4. 1., 일부개정]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1.>
도민의 권리와 협력	3. “인권약자”란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기본적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외국인노동자 조례

- 전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도청/의회의 의지/관심에 의존함
- 정의 조항에서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여 도내 사업장에서 근로하나 인근 타 지자체 거주하는 경우는 보호하지 못하는 한계를 내포함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9. 30.] [충청남도조례 제5062호, 2021. 9. 30., 제정] 충청남도(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2244	
목적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 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외국인노동자”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면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 를 말한다. *제2조(외국인근로자의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 중 취업분야 또는 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전문개정 2009.10.9]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분야 및 종사자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실태파악	①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파악 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지원사업	도지사는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외국인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쉼터	제8조(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광역 외국인노동자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원 지원 조례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시행 2020. 12. 30.] [충청남도조례 제4833호, 2020. 12. 30., 일부개정] 충청남도(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7	
1조 목적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정의	1. “외국인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2. “다문화가족”,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4조 도지사 책무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 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5조 지원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6조 지원대상	제6조(지원대상) ① 본 조례는 도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7조 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노동자 권익 및 인권보호 <개정 2020.4.1.>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도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설 2020.12.30.> 10. 결혼이민자의 모국방문 지원 사업 <신설 2020.12.30.>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30.> ③ <u>외국인주민 자녀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과 같다.</u> 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학교”라 한다)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2. <u>학교에 입학하기 전 방문학습</u> 3. 한국사회 문화 적응
9조 다문화정책협 의회	①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충청남도 다문화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행정부지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장 나.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다. <u>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u> 라. 충청남도교육청·충청남도지방경찰청·대전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관 2. 위촉직 위원 : 다음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단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단체장 나. 기관, 학계 및 <u>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u>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10조 다문화정책협 의회의 기능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u>평가에 관한 사항</u>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조 이주민지원센터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외국인주민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제7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	--

■ 목적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가정생활 지원

- 목적 조항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로 명시하여 외국인주민의 가정생활도 대상인 것으로 해석되지만 실제 지원 내용에서는 다문화가족의 가정생활 지원만 명시하고 있음
- 서울시는 외국인, 귀화자와 자녀로 명시하고 가족지원도 명시하고 있으며, 경남, 경기 등도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의 보육/교육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경기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도 명시)

=> 지원 내용에서 외국인주민 가족 생활 지원 포함 명시 필요

=> 아래 살펴 볼 외국인주민 지원내용에 자녀/가족 포함 필요

■ 정의 -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합법체류 기준, 외국인 가족 명시 부재

- 정의 조항에서 ‘90일 초과하여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하는데(표준 조례안 준용 대다수 조례가 90일 준거를 두고 있기는 함), 주민 조건 기간 기준을 두지 않는 도 인권조례와 지방자치법(지방자치법상 주소만 있으면 주민으로서 지위 가짐)과 합치하지 않음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6조(주민의 자격)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제17조(주민의 권리) ①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90일 기준을 두면 그 이전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됨(한국어 등은 가급적 빨리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임). 경기도 화성시는 2020년 전면 개정에서 90일 초과 조건을 삭제함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20. 7. 1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661호, 2020. 7. 15., 제정]

3. “외국인주민”이란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과 그 자녀 등을 말한다.

- 충남은 귀화자와 자녀 등 가족을 명시하지 않기에 외국인 주민의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간과하게 함
- 서울시는 90일 초과 거주 외국인, 귀화자, 자녀로 명시하고 가족지원 조항을 두고 있음. 한편 화성시는 90일 기준이 없으면 외국인주민 가족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경기도는 2020년 개정과정에서 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조항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포함하였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1. 7.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73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9.26, 2021.7.20>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교육사업
7.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의 보호·지원
9.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10.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20. 7. 1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661호, 2020. 7. 15., 제정]

제6조(지원계획) ①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 정착 지원
 - 나. 결혼이민자들의 직업교육 훈련 및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 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인권보호
 - 마.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 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 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의료 및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 아.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자.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차.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20. 11. 12.] [경기도조례 제6790호, 2020. 11. 12., 일부개정]

지원의 범위 제6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자녀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가정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신설 2020.11.12.]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본조신설 2017.4.12.]

■ **지원대상 - 합법체류**

- 또한, 충남은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제한하였는데, 재난재해 구호, 불법체류 해소 목적, 외국인가정 자녀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가능하도록 함이 현실적 대안으로 보임
- 긴급 의료, 재난, 유아동 인권 문제 등 논란의 여지가 없는 인권 사안이면 지자체 공무원 역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을 수는 없음. 인도적 지원 등을 명시한 지자체 조례는 이미 다수 있음(영등포구, 금산군, 화성시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14. 4. 2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1004호, 2014. 4. 24., 제정]

제6조(지원대상) ① 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 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금산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시행 2021. 11. 22.]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351호, 2021. 11. 22., 일부개정]

제5조(지원대상) ① 우리 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

2. 한국국적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으로 인하여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그 밖의 인도적 차원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화성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시행 2020. 7. 15.] [경기도화성시조례 제1661호, 2020. 7. 15., 제정]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할 수 있다.

1.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2. 체류자격과 상관없이 미성년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경우

- 한편 ‘외국인’을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석할 경우 (일시적) 무국적자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지만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참고로 경기도 인권 조례는 ‘외국인’을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10. 1.] [경기도조례 제6325호, 2019. 10. 1.,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말한다.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 기타 ‘거주하는’이 아닌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로 목적을 넣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음

=> 정의 조항 부분 변경 필요(90일 초과 거주기준 삭제, 외국인, 귀화자, 자녀 등 가족 명시 검토)

=> 외국인 주민의 지원 내용에서 가족 지원 포함 필요(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 등)

=> 지원 범위에서 합법 체류자로 제한하더라도 부가 조항에서 인도적 사유 등 지원 필요
(인권조례 합치)

■ 지원의 범위 - 외국인 주민 가족 지원 거의 부재, 통번역 서비스 조항 부재

- 지원의 범위 조항에서 가족관계 유지, 폭력 피해자 지원, 통번역 지원, 자녀 보육/교육지원 등을 다문화가족으로만 한정하고 있음
- 외국인 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은 인도적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며, 자녀 보육과 교육 역시 아동권리협약 비준 국가의 의무로 점차 여러 지자체 조례에 반영되고 있음.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서울시는 폭력피해 외국인주민 지원 등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외국인주민 일반의 경우 상담 지원 등에 통번역이 전제되나 지원 조항에 통번역이 명시

되지 않아 지원 현장별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상당수 통번역 활동가는 사실상 비정규직/봉사로 활동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 역량 강화 역시 보장되지 않음

- 특히 산업재해 비율이 높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산업안전 다국어 (노동자 모국어) 교육/정보제공, 의료기관 통번역, 공공기관 이용 시 다국어 편의 제공을 위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지원 명시 및 체계적 통번역사 양성/채용과 배치, 역량 강화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경우, 지원사업(20조)에 통번역 서비스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별도 조항(17조)으로 다국어 서비스 제공을 명시하여 다국어 서비스 강조하고 있음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시행 2020. 12. 31.] [경기도조례 제6828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17조(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추진할 때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0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종 시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홍보사업
2. 결혼이민자들의 사회 적응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과 사회 적응교육 및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9.1.14.]
3. 결혼이민자들의 출신 국가 및 문화에 대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9.1.14.]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에 관한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6.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9.1.14.>]
7. 다문화가족 내 아동 보육 및 단계별 교육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19.1.14.>]
8.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어려움의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9.1.14.>
9. 다문화 저소득 모자가정·가출여성 등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들에 대한 선도·보호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19.1.14.>] <개정 2012.5.11.>
10. 저소득층 다문화가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 [신설 2019.1.14.]
11.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19.1.14.>]

=> 외국인주민 가족 지원 및 통번역 서비스를 조항에 명시할 필요

■ 도지사 책무 - 전담부서 설치 노력

- 도지사 책무조항에서 전담부서 설치 노력을 명시하였으나 노력 여부에 대한 평가가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항으로 보임
- 외국인주민 비율 부동의 1위인 충남도에 전담부서가 없다는 것은 충남도의 체계적 정책 추진

결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

- 2016년 외국인주민 사회통합 TF팀에서도 추진과제로 전담부서 설치 포함한 바 있음

서울시는 전담부서 의무조항으로 명시하였고 전담부서 있음(외국인다문화담당관)
경기도는 의무조항 명시는 없어도 전담부서 있음(외국인정책과)
경기도 안산시에는 전담부서 있음(외국인주민지원본부)

=> 전담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한 점 점점(의회 보고 등), 설치 계획 수립 및 의회 보고 등 실행
으로 지속 관심 환기 필요

■ 지원계획 - 외국인주민(가족) 시책

- 지원계획 조항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이라 하였으나 세부 조항은 모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만 명시하여 사실상 다문화가족 시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서울과 경기도, 화성시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 모두 고르게 지원받는 방식으로 조례 개정하였음
- 전체 예산 편성, 사업 등 상대적으로 수와 비율이 적은 이주민 유형인 다문화가족(대부분 한-외 국제결혼가정의 여성 결혼이민자) 편중 지원으로 (국외) 혈통중심/가부장성 비판, (국내) 역차별 논란을 유발할 수 있음

=> 다양한 외국인주민(다문화가족 포함) 유형을 종합 고려하는 형평성 있는 통합지원 필요

■ 다문화정책협의회 - 실질적 기능 미비

- 다문화정책협의회 조항의 경우, 협의회(대체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라 지칭, 충남도는 다문화정책협의회로 지칭)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참여가 보장은 되어 있으나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는지, 당사자를 대표하는 외국인주민이 포함되는지 불분명함. 서울시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대표자 참여로 명시하고 있음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시행 2021. 7. 20.] [서울특별시조례 제8073호, 2021. 7. 20., 일부개정]**

제8조(협의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한 명과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다섯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5.14>

③ 협의회는 행정1부시장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단체, 기관, 학계 전문가
4. 1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대표자

- 또한 충남은 시행계획 평가 기능이 형식적으로 보임. 주기적 실태조사 없이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반영 내용이 무엇인지 불투명함.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는 추진실적평가 조항에서 3년 주기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전북은 5년 주기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시행 2020. 12. 31.] [경기도조례 제6828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21조(추진실적 평가)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예산지원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3년마다 도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지원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와 제2항의 생활실태 파악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시행 2020. 8. 14.] [전라북도조례 제4805호, 2020. 8. 14., 일부개정]**

제14조의2(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도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지원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8.14.]

- 기타 당연직 위원 구성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도 산하 기관장'을 포함하고 있는데 전국 유일 사례로 추정됨(통상 의회, 관계부서, 현장/단체 관계자, 연구/학계(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당사자로 구성))
- => 다문화가족 외 외국인주민 참여(가급적 개인 아닌 대표자)를 점검하고, 형식적 참여가 아닌 실질적 참여(적극적 의견 개진, 환류 등으로 참여 효능감 향상) 보장 필요
- => 3년/5년 주기 실태조사 필요(중앙정부는 3년 단위로 하고 있으나 계획은 5년 단위 수립)

■ 광역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 조항에는 있으나 아직 미설치

- 충남도 광역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 설치가 임의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외국인 주민 비율과 수를 고려할 때 도 단위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함. 이미 광역 7곳에 외국인주민 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음

<광역: 7개 지자체> 인천 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울산/서울 글로벌센터, 대전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 경남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부산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경기도 외국인인권지원센터

<기초> 울주군/여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외국인주민통합지원센터, 시흥/화성/수원 외국인복지센터, 김포/용인 외국인주민 지원센터, 안산 외국인주민지원본부 등

4) 영유아/아동청소년/보육/돌봄/지역아동센터 등 관련 조례

■ 외국인 /무국적 아동 보육 돌봄 - 지원 근거 미비

- 외국인주민 자녀 포함 명시 필요
- 안산시 경우 지역아동센터 조례에 이용 대상 아동 조항에서 외국인가정 아동을 명시

안산시 지역아동센터지원 조례

[시행 2020. 5. 20.] [경기도안산시조례 제2369호, 2020. 5. 20., 일부개정]

제5조(이용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
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3. 지역 내 빈곤 · 학대 · 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 · 조손 · 소년소녀 · 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거주외국인 가정의 아동
6.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하여 추천하는 아동 <신설 2020.5.20.>
7.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6호에서 이전 2020.5.20.>

5) 문화/예술 관련 조례

■ 문화/예술 및 문화다양성 법과 조례 - 아직 이주민 관련 정책 연계는 미흡

- 문화진흥,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 교육지원 등 문화 관련 조례에 문화다양성 가치를 담고, 외국인주민이 고려되는 방향으로 개정하여 관련 문화(예술)정책 수립 시에 이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

외국인주민 관계법령 등 개정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0.

부산광역시 이주민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통번역체계 구축방안. 부산광역시의회.
부산교육대학교산학협력단. 2020.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 여성가족부.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시행계획. 법무부

참고자료(다국어 지원 및 대표자 정책참여 관련 시책 사례)

□ 통번역 서비스 사례(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과제명(지역)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제공 기능 강화 (다문화가족 통·번역 서비스 등 지원)
사업 연도	2021
사업목적	-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언어적인 불편 해소를 위해 관공서, 병원 등 이용 시 필요한 통·번역서비스 지원 - 가족간 소통을 원활히 하고, 관공서나 병원방문 및 업무처리 시 언어적 불편을 해소하여, 장기적인 정착 지원
사업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초기 이용자에 대한 통역 및 상담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이용 시, 통역 및 정보 제공 지원 - 가족 간 의사소통, 병원, 보건소 등 공공기관 이용 시 통역 등 - 내방, 전화, 이메일 등 신청 방법에 따라 서비스 제공 - 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 이용자에 대한 통번역 및 종합상담 13개언어(한, 영, 중, 일, 베, 인니, 러, 우즈벡, 태국, 몽골, 캄보디아, 미얀마, 필리핀)지원 - 외국인주민을 위한 동행통역 및 문서번역 지원 - 부산지역 관공서, 병원, 유관기관 등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 지원
추진체계	- 여성가족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국비 예산 지원 - 부산광역시 : 운영 예산 교부 등 행정지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통번역사 지원 및 각종서비스 연계 - 국제교류재단 글로벌센터 : 통번역 서포터즈 운영 등
예산	218백만원(지방비 100%)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2021.4. 여성가족부 : 242~244쪽)

과제명(지역)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사업 연도	■ 2021
사업목적	■ 구청을 방문하는 외국인주민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외국인주민이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맞춤형 통역 콜 서비스 제공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8. 7월부터 매년 ■ 사업명 :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제공
추진경과	■ (2018. 7월)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통역 콜 서비스 시행 ■ (2018. 10월) 2018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수상
추진체계	■ 광산구
예산	■ 비예산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2021.4. 여성가족부 : 709~710 쪽)

과제명(지역)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명예통장
사업 연도	■ 2021
사업목적	■ 정보소외계층에 있는 외국인주민과 행정과 쌍방향 소통 창구 마련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3. 3월 ~ 지속 ■ 사업대상 : 관내 거주 외국인주민(결혼이민자, 외국국적동포, 외국인 근로자 등)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각종 행정기관(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책홍보 - 다양한 정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한 외국인주민 의견 취합·제출 등
추진체계	■ 추진주체 : 광산구
예산	■ 24.1백만원(지방비)
추진경과	■ 외국인 명예통장 위촉 - 제1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위촉 : '13. 4. 5. - 제2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위촉 : '15. 4. 21. - 제2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연임 : '16. 4. 5. - 제3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위촉 : '17. 4. 13. - 제3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추가 : '18. 4. 30. - 제4기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위촉(9개국 15명) : '19. 4. 10. ■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회의 개최(월 1회) : '13. 4월 ~ 현재 ■ 광산구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개정 : '17. 11. 15. - 명예통장 구성, 위·해촉, 임무, 수당 등 외국인명예통장 제도 명시화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2021.4. 여성가족부 : 1077~1079 쪽)

□ 대표자회의 사례(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과제명(지역)	(부산광역시) 결혼이민자 대표회의 운영
사업 연도	■ 2021
사업목적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생활 적응과정에서 느끼는 고충이나 의견을 청취하여, 다문화가족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 차원의 정책 수립 등에 반영
사업내용	■ 구 성 : 16명(구·군 추천) ■ 구성현황 : 국적별, 연령별, 결혼기간 등 고려, 구성 ■ 회의개최 : 연 2회 ■ 2021년 결혼이민자 대표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1. 3월, 10월 / 부산시청 - 참 석 : 결혼이민자 대표위원, 여성가족과장, 다문화사업 관계자 등 - 내 용 •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취업관련기관 초청 관련사업 설명 등
추진체계	■ 부산광역시
예산	■ 별도예산 없음(다문화가족지원 시책추진비 등으로 진행)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2021.4. 여성가족부 : 280~282 쪽)

과제명(지역)	서울특별시(결혼이민자의 정책수립과정 참여 확대 (외국인주민회의 운영))
사업 연도	■ 2021
사업목적	■ 서울거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 외국인주민과 관련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소통창구 마련
사업내용	■ 사 업 명 : 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19.1.18 출범) ■ 회의구성 : 25개국, 43명 ■ 역 할 : 행정 자문기구 및 제도적으로 소통하는 창구 ■ 기 능 : 외국인주민 정책 제안, 자문 및 모니터링 등 ■ 운 영 - 정기회의 총 18회 개최(전체회의 2회, 3분과의 각 4회, 기획위원회 4회) - 역량강화, 생활환경개선, 인권·문화다양성 3개 분과위원회 운영
추진체계	■ 추진주체 : 행정부는 대표자회의의 요구사항에 대한 협의 및 보고 ■ 추진절차 : 분과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안건 발의·전체회의에서 시장에게 정책 제안
예산	■ 39백만원(지방비)
추진경과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추진단 운영(11회)('14.10~'15.9) → 이주민 및 이주민단체 대상 설명회 개최(2회)('15.7~8)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구성·운영계획(시장 방침 제225호)('15.8) → 대표자회의 선정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선발('15.11) →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출범('15.12.18) → 1기대표자회의 운영('16~'18) → 제2기 대표자회의 선발 추진 TF팀 운영('18.08~11) → 제2기 대표자회의 선발('18.10~12월) → 제2기 외국인주민대표자회의 운영('19.01.01~ '20.12.31) → 3기 대표자 선발 추진 자문회의 운영('20.08~10) → 3기 외국인주민회의 운영('21.01.~ 22.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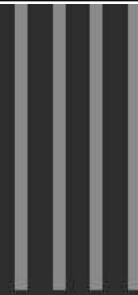
자료 :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 (2021.4. 여성가족부 : 118~120쪽)

재난시기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정보접근권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연구모임 : 제2차

2022년 3월 30일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류민 정책기획팀장



순서

- 03 인간의 존엄
- 10 재난과 불평등
- 17 재난 정보 접근권



이주민 & 이주노동자의 존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의 고민들

출입국 및 정주, 노동 관련 제도적 개선

이주민 관련 조례 제·개정, 미등록 이주민
지원 근거 확대, 이주민 존엄을 위한 기본
계획 수립, 전담 부서 설치 및 부서간 협업
체계 강화, 민주적 거버넌스, 광역 센터 등

사회적 안전망

이주민인권 가이드 & 사회협약, 재난 및
전환 시기 지원 정책 및 실행체계 구축 (정
보 접근권, 소득 지원), 사회적 돌봄 (영유
아 돌봄, 의료 접근성, 사회보험) 등

이주민 & 이주노동 조직화 지원

자조모임, 협동조합, 노동조합 활동 지원,
지원기관 및 당사자 조직 네트워크 강화 등

00

이주민 & 이주노동자의 존엄을 위한 노동권익센터의 고민들

정보 접근권 개선

온오프라인 다국어 지원 체계 개선, 통번역
지원 인프라 확충, 통번역 지원 활동가 노
동기본권 개선, 지역별 & 커뮤니티별 동료
지원가 모델 도입 등

노동(기본)권 실현 지원

이주노동(기본)권 매뉴얼 & 지자체별, 사
업장별 사회협약, 지자체/고용노동부/노동
사회단체 네트워크 강화, 특별 근로감독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노동권 상담 - 치유 시
스템 개선, 노동안전 및 건강권 지원 인프
라 확충 등

00

인간의 존엄

세계인권선언 | UN, 1948

우리가 인류·가족·모든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그들의 평등하고 빼앗길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할 때,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세상의 토대가 마련될 것이다.

[제1조]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 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03

인간의 존엄

필라델피아 선언 | ILO, 1944

[제2부] 모든 인간에게는 인종이나 신념, 성별에 관계 없이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안정과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조건 속에서 물질적 복지뿐 아니라 정신적 발달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04

인간의 존엄

대한민국 헌법 | 헌법 제10호, 1987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05

인간의 존엄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 1949, 2014 개정

[제1조] ① 인간의 존엄성은 침해될 수 없다. 이것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다.

② 그러므로 독일 국민은 이 불가침 · 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류공동체,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 인정한다.

③ 다음에 열거하는 기본권은 직접 적용되는 법으로서 입법권 · 행정권 · 사법권을 구속한다.

06

인간의 존엄

존엄, 존엄성에 대한 사유들

- 인간의 존엄, 인간 그 자체로서 도구가 아닌 목적
- 목적에 따라 억압과 착취, 이용당하지 않을 인간의 기초
- 자율성과 독립성에 근거한 인간의 존엄
- 내재적·절대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서 인간
- 존엄을 지키며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로서 인권
- '존엄의 훼손'으로서 '차별'과 '불평등'
- 인간의 존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무
- 존엄한 인간, 존엄성이 있는 자율적 개인에 대한 시민의 책무

07

인간의 존엄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

- 이주와 이동의 권리
- 사람을 만나고 유대를 나눌 권리
- 일할 권리
- 일을 멈출 권리
-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 쉼 권리, 아플 권리
- ...
- 존엄과 권리를 묻고 배우고 다투고 구현할 권리
- _____으로 존재할 권리

08

인간의 존엄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권리

- 존엄과 권리를 묻고 배우고 다투고 구현할 권리
- 알 권리, 실천과 참여의 권리
- 정보 접근권
-
- _____으로 존재할 권리
- 이주민으로,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어린이로, 아픈 사람으로 존
재할 권리
- 살아있을, 살아갈 권리, 생존의, 지속가능한 삶의 권리
-

09

재난과 불평등

폭염과 폭한, 홍수와 가뭄, 산불, 미세먼지, 감염병이 전 세계를 뒤덮었다. 11월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지구의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 2.4도나 더 오를 전망이다. **‘타오르는 지구’에서 재난은 ‘일상’**이 됐고, 세계 곳곳의 생태와 시민들의 삶이 고통 어린 신음에 휩싸여 있다.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생태와 시민의 삶에 연결된 '보편적' 위기지만 그로 인한 재난의 칼날은 늘 그렇듯 가장 먼저, 가장 깊이 더 불안하고 가난한 이들을 향한다. **계급과 인종, 젠더, 연령, 지역 등의 차별이 교차하는 사회적 관계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촉진하는 여러 사회적 재난들은 우리 세계의 차별과 불평등을 강화**하고 있다.

10

재난과 불평등

홍수와 같은 (사회적) 재난들은 “사회의 표면을, 익숙해진 삶의 방식을 쓸어 가 버린다. 하여 근원적 권력구조를, 불의를, 부패의 패턴을, 그리고 의식하지 못한 불평등을 폭로한다” (데이비드 브룩스, 뉴욕타임즈)

11

재난과 불평등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2021/2022

- **건강과 불평등** : 2021년 말까지 전 세계에서 550만 명 이상이 코로나19로 사망, 유럽연합(EU)이 70% 이상의 접종률을 이루는 동안, 남반구의 수많은 국가들은 여전히 1차 접종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12억 인구가 거주하는 아프리카에서는 연말 기준으로 접종률이 8%에 불과
- **시민 공간** : 각국 정부는 2021년의 여러 도전과제에 대한 최적의 해법을 놓고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대신,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들을 억압하고, 때로는 팬데믹을 명분 삼아 시민 공간을 더욱 축소시키려는 경향을

12

재난과 불평등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2021/2022

-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북반구의 냉대** : 전 세계적으로 분쟁과 폭력, 불평등, 기후 변화, 환경 악화로 인해 인권 침해가 발생, 수백만 명이 고국을 떠나는 상황이 계속,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2021년 중반 당시 세계적으로 집계된 난민은 2,660만 명, 비호신청자는 440만 명, 많은 정부가 보호를 제공해야 할 자신들의 책임을 외면하고, 난민과 이주민이 자국 영토에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자발적인 도착을 막으려는 심산으로 그들의 권리를 침해했다. 밀어내기 전술은 날이 갈수록 일상화, **다수의 정부가 난민 및 비호 신청자를 비롯해 이주 중인 사람들을 비합법적으로 차별**

13

재난과 불평등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2021/2022

- **대한민국 / 차별 / 이주 노동자의 권리** : 2021년 3월 대한민국(이하 한국)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경기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국내에 이미 체류 중인 이주 노동자를 분리·구별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강제한 행정명령이 차별적 조치라고 판단**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서울시에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인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고, 이에 서울시는 행정명령을 권고로 바꿨다. **지난 9월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저소득층 임시비자 이주 노동자들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외된 이들은 약 200만 명에 달하며 이들 다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제약으로 실업 상태에 있었다.

14

재난과 불평등

국제앰네스티 연례인권보고서 2021/2022

- 지난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하며 **이주노동자 등 소수자에 대한 한국의 구조적 차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평가
-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가 그동안 사회에서 소외됐던 소수집단에 더 큰 영향을 줬다고 평가. 특히 **이주노동자의 경우 지난해 코로나19 진단검사 강제 행정명령이 내려진 점(이후 철회), 저소득층 임시비자 이주노동자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제외한 점, 법무부가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외국인에게 ‘새우깡기’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도 지적**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기자회견, 2022/03/29)

15

재난과 불평등

감염병, 산불, 홍수, 미세먼지 등 기후위기가 촉진하는 일상적 재난시기, 어떻게 이주민의 존엄을, 생존을 보호할 것인가,
산업과 사회의 전환과 재편의 과정에서
이주민이 마주하는 노동의, 돌봄의, 정주의, 생태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전환의 대상이 아닌, 부수적 피해가 아닌,
전환의 주체인 이주민, 노동자, 도민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가

재난시기 이주민의 권리를 확대하고, 제도적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위기와 전환의 세계를, 재난의 현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들이 가 닿을 수 있도록, (재난)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는 것에서 부터 출발해야

16

재난 정보 접근권

재난 시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긴급하고 중요한 재난 정보들이 정확하고 빠르게, 차별없이 전달되는 것이 필요. 재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안전 보장의 기초.

한국사회 공공 재난 정보의 주요 경로들은
한국어 정보만을 전달하거나, 다국어 번역자료를 제공하더라도
영어와 중국어 두 개 언어 정도를 제공,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이 생산하는 10개 국어 이상
다국어 정보는 그 내용과 주기가 제한적인 현실.
한국어가 모어가 아닌 대다수의 이주민들, 불안정 장시간 노동으로
한국어를 습득하기 어려운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의
정보 접근과 이해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

17

재난 정보 접근권

재난 정보의 불평등은 결국 재난의 불평등으로.
지역 이주민들의 재난 시기 피해를 심화

“처음에는 마스크를 어디서 어떻게 사는 건지도 몰랐어요 ...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둘 있는데,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어떻게 찾아보는지도 잘 몰랐었고, 불안했죠 ... 문자 같은게 많이 오기는 하는데, 이해를 못 하고, 복사가 안되니까, 번역앱을 써 볼 수도 없고 ... ”

지역 이주민 S 인터뷰 중에서

18

재난 정보 접근권

“ 남편하고 같이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일하는데, 남편이 먼저, 그 다음에 저도 5개월을 일을 못했어요, 공장이 문을 닫아서... 월세도 못 내고,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해서... 다들 힘드니까... 도와주는 것들이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몰랐어요,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 (다문화지원) 센터에서 김치 같은 거 보내줘서 먹고 그랬죠 ... ”

지역 이주민 M 인터뷰 중에서

19

재난 정보 접근권

“같이 사는 동료가 확진되었는데, 회사에서 구해준 원룸에 같이 살아요... 걱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갈 곳도 없고 ... 근데 어차피 공장에서는 다 같이 붙어서 일하고”

지역 이주민 A 인터뷰 중에서

20

재난 정보 접근권

“백신을 맞을 수는 있다고 하는데 사실 무서워요. (단속) 안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사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맞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지역 미등록 이주민 F 인터뷰 중에서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부터 이것저것 계속 오류나고, 보건소로 갔더니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 저는 한국말을 그래도 (잘) 하는 편인데, 다른 이주민들은 더 힘들었겠죠”

지역 이주민 K 인터뷰 중에서

21

재난 정보 접근권

재난 정보의 사각지대는 지역사회 재난대응 체계의 사각지대로, 이주민 뿐만 아니라 전체 시민의 안전에 관련된 위험을 높일 수 있음.

- 2020년 12월, 천안지역 외국식품판매점 관련 외국인 집단감염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 2021년 2월, 당진지역 닭가공업체 확진자 39명 중 이주노동자 20명 (송악읍 소재 공동 숙소 생활)
- 2021년 10월 기준, 전체 확진자 중 이주민 비율 20% (중앙방역대책본부, 2021/10/13 브리핑)
- 2021년 10월 21일 기준, 법무부 등록 외국인 156만명 가운데 77만명이, 미등록 외국인은 39만명 가운데 21만명이 접종, 접종완료율은 각각 49.4%, 53.8%

22

재난 정보 접근권

공공 재난정보 주요 경로별
이주민 접근 제한 쟁점

재난문자

통신사 가입자 대상, 지역별 발송, 한국어 문자, 번역 등을 위한 문자내용 복사 불가
일부 지자체 영문 발송 서비스, 언어 및 정보 범위 제한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웹페이지

한국어 페이지 기본, 영어, 중국어 번역 페이지 제공, 번역 페이지의 경우, 일부 정보만 기재

지자체별 코로나19 웹페이지

한국어 페이지만 제공, 지역별 확진자 동선 등 지자체별 핵심 재난정보 접근 제한

23

재난 정보 접근권

공공 재난정보 주요 경로별
이주민 접근 제한 쟁점

행정안전부 Emergency Ready 어플리케이션

한국어, 영어, 중국어 제공,
다국어 지원 제한, 어플리케이션 인지도 및 활용도 매우 낮음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외국인 고용 사업장 및 다문화가정 대상 안내자료

의제별, 시기별 10개 ~ 16개 언어로
다국어 안내 자료 배포,
지역별, 사업장별 수령현황 및 실효성 미확인

24

재난 정보 접근권

주요 과제

재난 정보 접근권 강화

- 중앙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 등 이주민 & 이주노동자 대상 기존 정보 전달 체계 재검토, 온오프라인 배포 체계 확대
- 민간협력체계를 통해 공공 재난정보 다국어 지원 신규 콘텐츠 확대, 배포 체계 안정화

25

재난 정보 접근권

주요 과제

지자체 재난정보 온오프라인 플랫폼

충청남도 및 15개 시군 코로나19 페이지
다국어 지원, 도 재난정보 다국어 플랫폼
구축 및 온오프라인 거점 확대

통합 콜센터 등 인프라 및 협업 체계 개선

통합콜센터 등 기존 인프라 확충, 지원 활
동가 노동조건 개선, 부서간, 조직간 재난
정보 및 지원 협업 체계 안정화

다국어 재난 문자

영문 재난문자 등 다국어 문자 지원 확대
검토 - 온라인 재난정보 플랫폼 연계

26

재난 정보 접근권

주요 과제

재난정보 정기 간행물

지역 이주민을 위한 재난정보 관련
온오프라인 정기 간행물, 이주민 고용 사
업장, 이주민 가정,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배포

지역별, 사업장별 통번역 동료지원가 모델 도입

이주민 통번역 지원 체계 개선 의제와 연
계, 지역별, 사업장별 통번역 지원 활동가
인프라 확충, 이주민 커뮤니티 내 개인화
된 통번역 품앗이를 공공화, 공공일자리
연계 모델 고민, 재난 정보 및 지원 체계
접근 부터 노동권, 노동안전 쟁점 도움 등

27

재난 지원 체계

주요 과제

이주민 재난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

관련 조례 제·개정, 미등록 이주민을 포함
한 차별없는 재난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
거 마련, 기본 계획 수립

이주민 재난지원 특별 협의체

지자체, 고용노동부, 보건 및 방역 당국,
중간지원 조직, 이주민 당사자가 참여하
는 협의체 & 협업 실행체계 구축

사회적 돌봄, 의료 및 소득 지원 등 안전망

선주민과 차별없는 재난시기
사회적 안전망 강화

28

재난 지원 체계

주요 과제

재난 정보 접근권 강화

기존 재난 정보 체계의 다국어 지원 체계
확충, 이주민 맞춤형 재난 정보 콘텐츠 기
획 및 확산

노동환경 감독 및 개선

고용노동부 협업, 이주민 고용 사업장 재
난대응 시스템 근로감독, 가이드라인 기
획 & 배포, 작업환경 개선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주거 환경 모니터링 및 환경 개선 지원,
재난 침터 및 안전 숙소 공공 인프라 확산

29

노동자의 내:일을 다르게

충청남도노동권익센터
CHUNGCHEONGNAM-DO
LABOR RIGHTS CENTER

홈페이지 www.cnnodong.net

대표전화 041 633 5570

노동상담 1899 6867

페이스북/인스타그램/트위터/카카오톡 @cnnodong

유튜브 bit.ly/노동권익티비



3 연구모임 제2차 회의록

〈이선영 연구모임 대표〉

- 코로나19 재난을 겪으면서 외국인 확진율은 매우 높고 백신 접종률은 매우 낮는데 정보접근의 한계 때문. 따라서 통번역 서비스가 필수적임. 그러나 통번역 서비스는 다문화사업에만 국한되어 있음. 다문화사업을 뛰어넘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함.

〈우삼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장〉

- 외국인 미등록자와 관련해서 비합법적인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 미등록 아이들도 학교 갈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범죄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
- 이주노동자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많은 관리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을 잘 이루는 것이 지방정부의 책무
- 충남에서 동포 자녀 보육료 지원을 선도적으로 실시한다면 지역 사회도 발전하고 이주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것

〈김학로 당진지역사문화연구소장〉

- 농촌 노동력 부족문제가 심각해 인구감소문제, 지역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동포 재입국이 정부대책으로 진행중이지만 각 소관부처끼리 업무 협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한 피해는 지자체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음.

- 충청남도에서는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정책을 혼동하고 있음. 담당부서 의원님들께서 조례 제·개정 등의 필요성이 있음.

〈유요열 [사]홍성이주민센터 대표〉

- 의사소통이 안돼서 오는 문제들이 많음. 의사소통이 되어 정보 공유가 되면 많은 것들이 해결됨.

〈윤향희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은 처음부터 차별의 대상이었던 것 같음. 외국인에 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은 한국인과 결혼한 가족이기 때문. 외국인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났을 때부터 차별대상. 산후조리부터 보육료, 방과 후 교육까지 지원 안 됨. 교육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음.
- 재난시기 외국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고려인 동포들은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많음. 한국에서 체류하기 위해 통번역사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는 1~2명에 지나지 않고 더구나 이들에 대한 기본임금이 확보되지 않아 이들이 공장이나 식당으로 내몰리며 재능이 사장되고 있음. 충남에서 통번역사에 대한 재교육 실시 필요. 어떻게 진행할지 연구모임을 통해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음.

〈이공휘 충청남도의회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외국인 주민 중에서 통번역이 가능하신 분들은 경제적 접근(경제실)과 사업을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 일시적인 통번역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접근을 하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충남도 내 대학교 학생들과 연계해보는 것도 고려해볼만 함.

〈이미영 여성가족정책관 팀장〉

-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부터 조금씩 적용해봐야겠다는 생각

〈한용구 일자리노동정책과 팀장〉

-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중앙부처의 문이 닫혀있음.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려면 상황을 알아야 정책을 구축하는데 현장을 알 수 없다는 애로사항이 있음.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충남도에서 지원받고 다른 지역으로 일하러 가는 분들도 있어 현황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봄.
- 각 부서에서 많이 참여해서 지금 나오는 의견들에 대해 토론하여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했으면 함

〈이선영 연구모임 대표〉

- 여성가족정책관 혼자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순 없음.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지 않으면 답보상태. 외국어로 충분히 안내가 되어야 함.

4 토론회 결론

- 재난시기 정보접근권이 낮은 이주민을 위한 통번역서비스 제공 필요
 - 통번역사 임금 확보 등 처우 개선
 - 통번역사에 대한 재교육 실시 필요
 -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 필요
- 여러 부서의 협치 필요
 - 여성가족정책관, 경제실, 복지실 등 여러 부서의 참여와 협치 필요
 - 중앙정부 각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필요
- 재난정보 접근을 위한 언어장벽 해소 지원 필요
 - 다국어 재난 정보시스템 도입 시급
 - 지방정부에 재난시기 외국인의 안전에 대한 책임이 있음

5 후속조치(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 및 의견들이 도정과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통보 및 과제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
 - 충청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6 연구모임 제2차 토론회 언론보도

충남도의회, 외국인 주민들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체계 확립 모색

✎ 이용환 기자 / ⑤ 승인 2022.03.31 00:34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2차 회의 개최...타 시도 조례와 비교 연구
이주민 삶의 개선 위한 입법체계 개선 및 재난정보접근권 확대 필요성 공감



충남도의회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은 30일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주민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외국인 주민들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체계 확립 모색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30일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대표 이선영, 이하 연구모임)'이 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 주민이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북남 충남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충청남도 이주민 관련 조례 개선방안'을 발표했으며, 류민 충남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팀장이 '재난 시기 이주민·이주노동자의 정보접근권'을 주제로 발표한 후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했다.

우 위원은 "거주 또는 체류 자격요건 한정으로 조례 적용 대상이 배제된다"면서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외국인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류 팀장은 "사회적 재난이 일상화된 지금, 재난정보에 대한 접근은 생존권과 직결된다"면서 "언어장벽으로 재난 지원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다국어 재난 정보시스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정의당 이선영(초선, 비례) 의원은 "충남도는 조례를 통해 외국인 주민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집행부와 협의해 센터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힘쓰겠다"며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존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입법체계를 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4장 연구활동 결과보고

[별지 제8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연구모임명	지역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표자	이 선 영 의원
연구과제명	지역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마련
연구목적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방법	○ 주제 발제 및 토론회를 통한 문제점 도출 및 정책제언 논의
연구내용 요약	○ 지역 이주민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조례 개선, 언어교육, 보육료 지원 등 지원대책 마련 ○ 전담조직 구축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보공유, 각 부서간 협치
기타사항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 선 영 (인)

충청남도의회위원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연구활동비 정산서

연구모임명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 표 자		이 선 영 의원
연구과제명		지역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마련
연구 목적		지역 이주민이 마주한 일과 삶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과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 생산과 사회적 관계의 지속가능성 모색
연구 활동비	지 원 액	3,000천원
	사 용 액	3,000천원
	지출내역	「세부 지출내역 붙임」
기타사항		

붙 임 : 연구활동비 세부 지출내역서(영수증 포함) 15부

「충청남도의회 연구모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20일

지역 이주민의 존엄을 향하는 정책 연구모임 대표의원 이 선 영 (인)

충청남도의회의장 귀하

<별지 2>

연구활동비 지출내역

□ 집행실적

일 자	내 역	금액(천원)	비 고
총 계		3,000	
2022-02-24	연구모임 현수막 제작	44	
2022-02-24	제1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80	
2022-03-11	제 1 차 회 의 참 석 수 당	750	회원(김학로) 계좌 개설시 수당 지급
2022-03-30	의원 연구모임 오찬간담회	240	
2022-03-30	제2차 연구모임 다과 구입	160	
2022-04-06	제 2 차 회 의 참 석 수 당	950	회원(김학로) 계좌 개설시 수당 지급
2022-06-13	회원(김학로) 계좌 개설에 따 른 수 당 지 급	400	
2022-06-15	최종보고서 책자 제작	376	